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6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추경호 · 안철수
박수민 · 김대식 · 윤영석
박형수 · 김기웅 · 서일준
강승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, 산불예방진화대,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산불,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

것임(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).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시하여야”를 “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5. 산림재난피해지 및 그 인접 지역 주민

6. 산불 발생 위험지역,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병해충 위험지역 주민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(산림재난방지 교육) ① (생략)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<u>실시하여야</u>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④ (생략)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(산림재난방지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</u>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산림재난피해지 및 그 인접 지역 주민</u> 6. <u>산불 발생 위험지역,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병해충 위험 지역 주민</u>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있으며,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